운반 급식 운영계약서

위탁사 : (주) 원익IPS

수탁사 : (주)온정케이터링

계 약 서

(주)원익IPS (이하"甲"이라 칭한다)와 (주) 온정케이터링(이하"乙"이라 칭한다)은"甲"이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진행하는 급식을 "乙"이 위탁받아 운영함에 있어서 다음과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甲"과"乙" 쌍방이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약정 한다

~ 다 음 ~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甲"의 직원급식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甲" 과 "乙"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쌍방의 기본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급식 수준)

"乙"은 "乙"이 제안하고 "甲"이 동의한 한국인 성인남녀의 영양 권장량을 충족시키는 양질의 급식을 "甲"의 직원에게 공급하며 "甲"의 직원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수준의 급식 서비스를 실시한다.

제 3 조 (계약 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2년 09월 17일 부터 2013년 09월 17일 까지 1년 간 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 시 쌍방이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으로 연장 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 4 조 (급식시간과 메뉴)

- 가. 급식방법 : 식판 자율배식을 원칙으로 한다.
- 나. 메뉴작성: "乙"은 매주 금요일까지 "甲"에게 다음 주 주간식단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다. 메뉴구성 : 1식 5찬을 메뉴로 구성하여 공급한다.
- 라. 급식시간 :조식(07:30~08:30) , 중식 (12:00~13:00), 석식(17:30~18:30) 하며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시는 미리 통보하기로 한다.

마. 특식지원: "乙"은 "甲"에게 월1회 특식 제공 한다.

제 5 조 (식사대금 및 대금 지불)

- 가. 일식수 100식을 보장식수로 하며, 100식 미만은 "甲"이 식수보장하고, 100식 이상인 경우 실수량 정산한다.(단, 일식수는 원익IPS와 협력사의 합계 식수로 한다.)
- 나. 1식 급식단가는 4,500원(부가세별도) 으로 한다.
- 나. 대금정산은 "乙"이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 마감한 자료를 "甲"의 확인을 거친 후 익월(5)일까지 청구하고 "甲"은 익월(10)일까지 현금으로 결제한다.
- 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물가인상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甲"과 "乙"의 합의를 거친 후 식단가를 조정, 변경 할 수 있다.





제 6 조 (조리, 가공 장소 등)

가. 공급되는 모든 식품은 "甲"의 지정 조리장 시설을 이용하여 "乙"이 직접 조리한 식품이 어야 한다.

제 7 조 (시설 설비)

- 가. "乙"은 "甲"이 요청하는 바에 의하여 식당 시설 설비 또는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나. 상기 "가"항에 의하여 제공된 시설 또는 비품에 대한 소유권은 "乙"에게 있으며 "甲"은 분실 또는 파손방지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 다. 계약이 종료되면 "乙"이 제공한 식당시설의 비품 등은 협의에 의해 "甲"에 현물가로 인수인계 할 수 있도록 하되, "甲"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乙"은 해당 비품 등을 전부 회수 하여야 하며 "甲" 소유의 물품 등은 계약 전의 상태(수량, 위치 등)로 회복시 켜야 한다.

제 8 조 (위생 관리)

- 가. 식품의 제조 운반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함은 물론 "乙"이 "甲"에게 공급한 주, 부식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乙"이 민, 형사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은 지며 사고 발생 일부터 급식운영계약을 "甲"이 일방적으로 해약 할 수 있다.
- 나. "乙"은 제공하는 식품에 대하여 음식물의 변질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그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144시간 이상 보관 하여야한다.
- 다. 급식제공을 통하여 발생되는 쓰레기 및 잔반은 "乙"이 수거하여 당일 처리한다.
- 라. "乙"은 "甲"이 원하면 언제든지 식품 조리하는 과정 등 조리장소를 공개하여야한다.
- 마. "甲"과 관련한 기관에서 급식장소를 위생 점검 시 응해야한다.
- 바. "乙"은 단체급식법령과 식품위생법령의 제반규정사항을 준수 하여야한다.

제 9 조 (손해 배상)

- 가. "乙"은 식품위생법을 준수하여 식사제공에 따른 위생관리에 책임을 지며 식중독 등 안전사고와 기타 법적해석상 과실로 인정되는 사고발생시 "乙"은 즉각 사후처리를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비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고 아울러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책임은 "乙"에게 있다.
- 나. 또한 "乙"은 제반사고 발생 시 보험에 의해 우선적으로 손해배상을 하여야하며 보험금 이외에 지출에 대해서도 "乙"이 부담 한다.

제 10 조 (보 험)

"乙"은 본계약과 관련한 음식물관련 사고에 대비하여 "乙"의 비용과 책임 하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甲"이 요청할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甲"에게 제출한다.(현대해상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보상한도 3억원)





제 11 조 (계약의 해지)

"甲"과"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기간중이라도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서 계약을 중도해지 할수 있다.

- 가. "甲"과"乙"이 본 계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 나. "乙"이 사정에 의해 급식서비스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 다.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라, "乙"이 본 계약에 정한 의무와 책임을 중대하게 소홀히 하여 "甲"의 경고가 3회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단, 상기 '다'항 이외에 항들에 해당될 경우 30일간 예고기간을 두어야하며, 음식의 품질과 위생에 관한 사항은 "乙"의 중대한 의무로 본다.)

제 12 조 (권리 양도)

"乙"은 "甲"의 사전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 13 조 (기타 사항)

가. 보안 의무

"甲"과"乙"쌍방은 본 계약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상대방의 관련사항을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나. 약정 이외에 사항

본 약정에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甲"과"乙"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의에 달하지 못한 사항은 일반 상, 관례 및 법률에 따른다.

다. 약정 내용의 개정

본 약정내용 중 개정사항의 필요시 "甲"과"乙"은 상호 합의하여 새로운 내용을 서면 으로 작성 체결함으로서 개정된 약정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

라. "乙"은 "甲"의 뷔페에 관한 요청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甲"과"乙"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년 09월 17일

"甲":

경기도 평택시 지제동

(주) 원익IPS 대 표 이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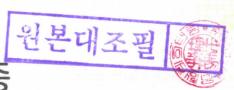


"Z":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669-1

(주) 온 정 케 이 터 링 대 표 이 사 견 엄





사 업 자 등 록 증

(법인사업자)

등록번호: 124-85-63671

법인명(단체명): (주) 온정케이터링 오산지점

대 표 자 : 견엄수

개 업 년 월 일 : 2009년 07월 08일 법인등록번호 : 131311-0030654

사업장 소재지 : 경기도 오산시 원동 346-11 호산프라자 101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청북면 율북리 669-1

사 업 의 종 류 : 업태 서비스 종목 도시락배달

교 부 사 유 : 신규

2009 년 07 월 09 일

수원 세무서장

6,90077193

(page 1/2)

HiLife

Hicar

청약서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기본사항

督制的表示 F-2012-0487351	제약현차 2012.07.03 전계약반호 F-2011 0447770
무렇지간 2012.07.03 24:00 부터 2013.07.03 24:00 까지	
[秦本]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의 보 리 ス 可
계 ⁹ 의 지하 중 수 (451-833) 경기 평택시 전북면 율복리	669-1
인탁처 031-683-8//8	E-mail
- 교피보철자 ⁽¹⁾ (수)은정케이터링 (125 원1-31252)	
<u> </u>	일시남 날인하실보험료 334,700원

배상보장사항

◎ 보험가입대상 및 보산한도액

순번 목적들명	목적불구분생	실출기조란위	a 산출기초수	자인 F 현
음식물	케이터림	연간매출액	4,660,623,710	제조엄자
복적 불NO 보충	河	108	图列混印 () 喜!	보신한토애 기자기부남금
1 생산물-손해사고	일괄매상 WON	30,000,000	300,000,000	300,000
[구가약한] [[전용양관] 판매인 특별약관				

배 가입악관

1.생산물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1) 손해사고기준	2.판매인 특별약관
3.난짜인식으류 보장제의 추가약관	

보험기입사항

보험재임시를 (회사명기보험증목)第7일기간 / 보장사항 / 토립등) 第一年

보험가입 유의사함 (공통)

※ 해당계약의 최저보험료는 70,000월 입니다. 보험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도 최저보험료 기준이 적용되어 환급보험료가 최저보험료 미만인 김우에는 환급 보침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선 알릴 의무사항

- ♨ 보험게역자, 피보취자 또는 이들의 내리면은 천약서(실분시포함)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시항을 사실 그대로 빠짐없이 알려야 합니다.
- ◈ 모험계약자, 피모험자, 또는 이들의 내리면의 꼬띄니 중대한 괴실로 경약서 기재사항에 참하여 사실 그대로를 일러지 어디한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 무럽계약자, 피모함자 또는 이를 내라면의 시기행위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은 무효이며, 이 경우 모험료는 통리느리자 많습니다.
- 보험기간에 시작된 이후라도 불합로를 받기신에 발생한 손해는 모상하지 않습니다(호수단보통제외).
- 🚸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의에 대한 계약 전,우 알릴 외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전하지 않습니다.

가지급보험금제도

※ 가시급보여급제도란 보험시고로 인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삼청구권자의 생황안정, 생개유시, 경제식· 남신적 이겨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 약관 및 보험종목에 따라 지급가능한 범위내에서 산성한 보험금을 가지급해드라는 제도입니다.

본인은 청약시에 기재된 내용 및 약관의 주요대통에 대해 실 명하였으며, 청약시에 기재된 내용과 사고 발생시 조사한 내 용이 다를 경우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히 안내 하밌습니다.

세약날당사 :

(세명/인)

약관의 청약서/질문서로 받아 그 내용을 입지하고 약관과 기재된 경약시항에 이익기 있음을 확인하니다.

34 ※청약서내음 및 보험가임유의사항은 반드서 확인하십시오





※ 집역서만으로는 문학계약의 효력이 없으므로 보회로 영수층 및 중인 내용ਲ 확인포 청역세,증권, 영수중을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송탄지점 박혜겸(063063)

031 - 666 - 2616 FAX 0507 - 771 - 9871

H.P 010 - 3373 - 3763

콜센터 1588-5656 h i . o o . k i

다음 Page에 계속

현대 현대해상화재보험

발행일: 2012, 07, 03 / 발행지: 조은전(308050) 무서덕경 : (데~!!!)-:!44